

1. 학원가 주변 고카페인 음료 판매업소 지도·계몽 활동

(서대문구)

겨울철 방학기간 관내 학원가 주변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다량 섭취로 인한 건강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와 합동으로 지도 계몽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10조(표시기준)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33호(제2014. 2. 12. 개정)]

□ 추진배경

- 최근 일본에서 고카페인 음료(에너지음료) 다량 섭취로 인한 사망 사례 발생
- 19세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다량 섭취 시에 부작용 우려
※ 고카페인 함유 음료란? 카페인 함량이 m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을 말함.

□ 추진개요

- 기 간 : 2016. 1. 19. ~ 1.22. (4일간)
- 대 상 : 학원가 주변 소규모 슈퍼마켓 편의점 523개소
- 인 력 : 2인 1조 4개반 운영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8명 참여)
- 내 용
 -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다량 섭취로 인한 부작용 홍보(포스터 부착)
 - 판매점내 '고카페인 음료 코너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비의도적 구매 방지(스티커 부착)
 - 시중 판매 중인 카페인 음료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
 - 고카페인 음료의 표시기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보관기준 적정 여부 등
- 방 법 : 소규모 식품판매업 전 업소 고카페인 음료 판매 협조 안내문 발송 및 학원가 주변 식품판매업소 현장 지도점검

□ 기대효과

- 식품판매점(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고카페인 음료 판매 관련한 인식 개선
- 19세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다량 섭취로 인한 부작용 방지

※ 참고자료

1. 고카페인 음료 주의하세요! 포스터 제작(안)



- 크기 : 가로420 × 세로297 (cm) [A3사이즈]
- 재질 : 아트지
- 수량 : 300매

2. 「고카페인 음료 제품 코너」 스티커 제작(안)



- 크기 : 가로 15 × 세로 5 (cm)
- 재질 : 코팅지 (양면 스티커)
- 수량 : 1,000매